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3. 16 선고 2017가합54676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주식회사 A

변론 종결2018. 2. 28.

판결 선고2018. 3. 16.

주 문

1.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,328,646원 및 그중 218,141,404원에 대하여 2017. 6. 28.부터 2017. 9. 4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, 2015. 5. 12. 보증금액 90,000,000원, 보증기한 2016. 5. 11.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, 2016. 8. 31. 보증금액 135,000,000원, 보증기한 2017. 8. 30.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, 피고의 사내이사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 -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, 피고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'국민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 - 원고와 피고는 2016. 5. 9. 위 2015. 5. 12.자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금액을 80,750,000원으로, 보증기한을 2017. 5. 11.로 각 변경하였다.
 - 피고는 2017. 3. 2.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2017. 6. 28. 피고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18,444,314원을 변제하였으며, 원고는 피고로부터 302,910원을 회수하였다. 그리고 확정손해금 82원, 위약금 187,160원이 발생하였다.
 -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정한 비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원고는 2016. 2. 1.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0%로 정하였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18,328,646원[=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액 218,141,404원(= 대위변제금 218,444,314원 - 회수금 302,910원) + 확정손해금 82원 + 위약금 187,160원] 및 그중 구상금 잔액 218,141,4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. 6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. 9. 4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변제자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

주장하나, 이는 법률상 유효한 항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재판장판사이상윤

판사권경원

판사신동일